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류취약지역 등에 대한 추가배송료의 부과 제한〉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22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2216422)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물류취약지역 등에 대한 추가배송료의 부과 제한(안 제16조의2 신설 등) ...	3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221642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종오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1. 29.
3. 회 부 일 : 2026. 1.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총배송비의 경우 육지권과 제주, 도서 지역 간 격차가 각각 6.1배, 7.7배에 이름. 특히 육지권 총배송비는 감소하는 동안 제주, 도서 지역 배송비는 인상되고, 같은 업체·제품·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가 상이하여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추가배송료의 신고·고지 의무 및 부당한 부과행위를 규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부과현황을 공시하고 상한금

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물류취약지역 등에 대한 추가배송료의 부과 제한(안 제16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물류취약지역 또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기본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사유, 산출근거, 금액 등을 신고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며(안 제16조의2) 매년 지역별 **추가배송료 부과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또한 택배서비스사용자의 추가배송료 부과 제한·신고·고지 의무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39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u>“추가배송료”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지역 등 배송지역 또는 배송조건을 이유로 기본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6조의2(추가배송료의 부과 제한 등)</u> ① <u>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 또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 기본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배송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 지역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운송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배송료를 부과할 수 있다.</u> ③ <u>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사유, 산출근거, 금액 및 적용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④ <u>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사유, 산출근거, 금액 및 적용지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u> ⑤ <u>택배서비스사업자는 추가배송료의 기준 설정, 인하 또는 폐지를 이유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료·성과급 등 보수를 감액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⑥ <u>택배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u>

현행	개정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발생한 추가 운송원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2. 제4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 3. 명목을 달리하여 사실상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 4. 합리적 사유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
<신설>	제16조의3(추가배송료의 관리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지역별 추가배송료 부과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가배송료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물가 변동, 운송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 ----- ----- ----- ----- ----- -----.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7. ~ 14. (생략)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의2에 따른 추가배송료 부과 제한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추가배송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56개의 시·군·구가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되었음.¹⁾

【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물류취약지역 】

구분	물류취약지역(56개 시·군·구)
부산(1)	강서구(가덕도동)
인천(4)	중구(용유동), 서구(신현원창동), 강화군(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경기(3)	안산시(대부동), 화성시(우정읍, 서신면), 가평군(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북면, 조종면)
강원(13)	춘천시(동산면, 북산면), 원주시(귀래면), 삼척시(가곡면), 홍천군(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영귀미면), 횡성군(안흥면, 둔내면, 공근면, 서원면), 영월군(상동읍, 북면, 남면, 주천면, 김삿갓면, 한반도면, 무릉도원면, 산술면), 평창군(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정선군(남면, 북평면, 임계면, 화양면, 여량면), 철원군(철원읍,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서면, 근남면), 화천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양구군(동면, 방산면, 해안면, 국토정중앙면), 인제군(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고성군(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충북(1)	영동군(용화면)
충남(6)	보령시(웅천읍, 오천면, 주산면, 미산면), 서산시(팔봉면, 지곡면), 당진시(석문면), 서천군(장항읍), 홍성군(서무면), 태안군(안면읍, 근흥면)
전북(7)	군산시(옥도면), 완주군(상광면), 진안군(용담면, 성수면, 정천면, 주천면), 무주군(무봉면), 장수군(장수읍, 번암면), 고창군(심원면, 부안면), 부안군(계화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위도면)
전남(10)	목포시(유달동), 여수시(돌산읍, 울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상산면, 월호동), 고흥군(도양읍,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영남면, 과역면), 보성군(벌교읍, 문덕면), 해남군(화산면, 송지면, 화원면), 무안군(망운면), 영광군(낙월면), 완도군(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진도군(진도읍,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신안군(지도읍, 압해읍, 중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경북(3)	영덕군(장수면), 봉화군(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울릉군(울릉읍, 서면, 북면)
경남(6)	통영시(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옥지면, 한산면, 사량면), 사천시(동서동), 양산시(원동면), 남해군(상주면, 미조면), 하동군(금남면, 진교면), 합천군(봉산면)
제주(2)	제주시(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상도1동, 상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경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택배배송기간 및 비용이 타 지역대비 길고 비싼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²⁾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³⁾

【 제1차('22~'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

- 도서지역 택배비 현황, 문전배송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도서지역택배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23~)
 - 도서·산간지역의 배송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택배서비스평가 항목 내 '도서·산간지역 배송품질' 관련 항목·기준 신설('23~)
 - 온라인쇼핑업체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금지행위 예시*에 배송비 관련 내용 추가(공정위)
 - * "연륙교 개통으로 택배사업자가 도선료 등을 배송비에서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됨을 계속 표시·고지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농어촌, 산간 등 생활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택시, 버스 등과 연계한 공유형 택배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추진('24)
 - * (예시) 마을버스, 100원 택시 등과 연계한 택배서비스 제공, 도서지역 공동 집화서비스(섬→내륙) 제공, 지역자활센터 등과 연계한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 도서지역 인근 내륙에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하여 도서민이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예시) (기준) 기본요금 5,000원+추가요금 6,000원 → (개선) 기본요금 5,000원(내륙과 동일, C2C 기준)

2)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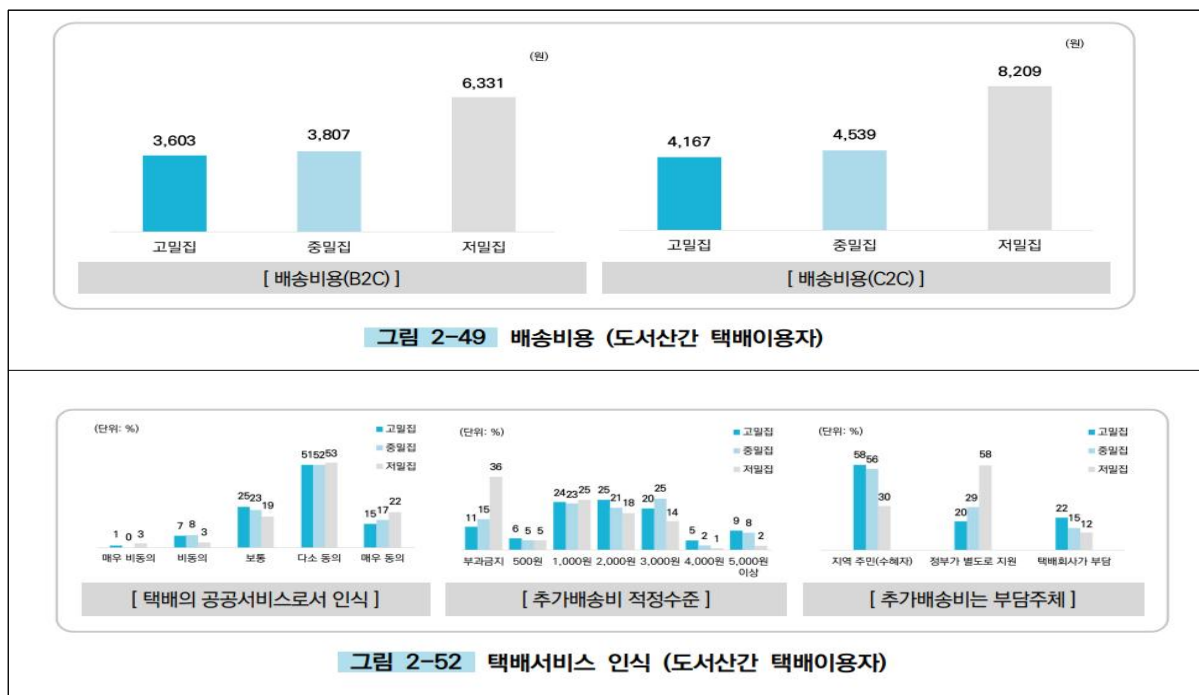
3)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②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

그러나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기본요금 외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어 지역주민에게 과도하게 배송비용이 전가되고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의 「2024 생활물류 서비스 보고서」⁴⁾에 따르면, 도서산간 지역의 배송비용은 추가요금 등의 부과로 타지역 대비 평균 2~4천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산간지역 주민은 택배를 공공서비스로 인식하는 수준이 타 지역 대비 높은 편으로, 추가배송비 부과를 금지하거나 추가배송비를 정부나 택배사에서 부담하기를 희망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도서산간 택배이용자 배송비용 및 추가배송비에 대한 인식 】



4) 한국교통연구원, 「2024년 생활물류 서비스 보고서」, 2025.9.30.

표 2-2 도서산간지역의 추가배송비 지불 부담 주체

(단위: %)

구분		정부가 별도로 지원	택배회사가 부담	지역 주민(수혜자)이 부담
전체		58.0	30.0	12.0
성별	남성	57.3	33.3	9.3
	여성	58.7	26.7	14.7
연령	20대 이하	81.8	9.1	9.1
	30대	50.0	33.3	16.7
	40대	35.3	47.1	17.6
	50대	70.4	25.9	3.7
	60대 이상	56.6	30.1	13.3
구분	도서지역	64.0	20.0	16.0
	산간지역	46.0	50.0	4.0
지역	인천/충남 섬지역	45.7	48.6	5.7
	전북/전남 섬지역	71.4	2.9	25.7
	경북/경남 섬지역	76.7	6.7	16.7
	강원 산간지역	68.0	32.0	0.0
	경북 산간지역	24.0	68.0	8.0

또한 도서·산간지역의 과도한 추가배송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열악한 생활물류로 인해 내륙지역보다 평균 5배 이상의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 섬 지역 택배비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물류취약지역 또는 도서·산간지역에 기본 생활물류 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로 배송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5)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제도개선 권고 - 추가 배송비, 자동화물비 등에 대한 합리적부과 방안 마련...주민 부담 줄여 -」, 2022.5.31.

추가배송비의 부과사유, 산출근거, 금액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추가배송비 부과를 방지하고 물류취약지역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추가배송비의 부과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더라도 추가 운송원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서비스 요금인 택배운송비에 대해 요금결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일반지역에 비해 배송밀집도가 낮고 배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인건비·유류비 등 단위당 배송비용이 높은 물류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자의 배송기피 및 서비스 지역 축소로 인해 입법취지와 달리 물류취약지역의 소비자 편익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자가 추가배송비 부과 시 부과사유 및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운송원가 등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상 중요정보 및 경영전략을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육지-섬 지역 간 생활물류비의 격차를 해소할 위해 택배 추가운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가격규제방식 외에도 물류취약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택배 추가운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설·추석 기간 섬 주민이 택배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는 택배 추가운임의 일부 지원을 통해 육지-섬 간 생활물류비 격차 해소
- 추진방식 :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우편물을 이용한 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설정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에 따라 지급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택배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지원 또는 최대 3천원(지자체별 상이)

□ 예산(해양수산부)

- (2025년) 2,565백만원, (2026년) 2,565백만원
- (산출) 2,565백만원 = 171만건(예상지급건수) x 3,000원(1건당 지원단가) x 50%(국비보조율)(2026년)

※ 자료 : 해양수산부 2026년도 예산 및 보도자료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택배서비스 이용 요금은 민간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영역으로 사업자-이용자 등의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므로 추가 배송료에 대해 국가가 상한을 설정하고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민간영역에 대해 국가의 과도한 개입 우려가 있으며, 택배업체의 도서·산간지역 배송 기피, 서비스 지역 축소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도 감소할 우려가 있어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임.

2) 법무부 의견

추가 배송료 고지 및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택배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추가배송료 부과사유, 산출근거 등을 신고 및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상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다. 이해관계자 의견

1) 통합물류협회 의견

민간 서비스의 요금을 법률로 강제 규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원가 및 산출근거의 신고 의무는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인 원가 구조 노출을 강제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일반지역에 비해 고강도 노동이 투입되는 도서 지역 배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서·산간 지역 배송의 고강도 노동과 실비가 반영된 정당한 대가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종사자의 실질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물류여건이 취약한 도서·산간지역의 배송 기피, 서비스 지역 축소 등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2) 생활물류서비스협회 의견

도서·산간지역은 낮은 배송 밀도와 긴 이동 거리로 인해 일반 지역에 비해 운영비가 월등히 높아 무조건적인 추가 배송료 부과 금지는 영업점의 실질적인 적자 운영과 해당 지역 서비스 기피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배송료 관련 수익이 감소함에도 종사자 보수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영세 영업점에 전가될 수 있음.

3)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의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은 비용 구조, 운송 여건, 수요 특성, 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의 산출근거를 신고·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원가 구조 및 내부 경영정보 공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핵심적인 영업비밀 및 경영 전략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음.

또한 도서·산간 추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해당 지역 배송 중단, 일부 상품 배송 제한, 배송주기 축소 등 서비스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택배사업자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지역 배송요금 인상 또는 상품가격 인상 등 ‘교차보조’ 형태로 비용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입법 취지와 달리, 전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